

금융지원

금융

혁신창업사업화 자금

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

신청시기 : 연중수시 지원대상 : 중소기업
전담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1. 창업기반지원

■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

〈청년전용창업자금〉

-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

〈창업기반지원자금(대환대출)〉

- 제2금융권 고금리(연 7% 이상)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

■ 지원규모

■ 창업기반지원자금(일반)

구분	용자 조건
대출한도	(직접·대리대출) 연간 60억 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(대환대출) 대상채무금액 이내(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) (성장공유형) 기업당 30억원 이내
대출기간	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: 2년 이내) (성장공유형) '신성장기반자금' 사업의 지원내용 파트 참조
대출금리	(직접·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0.3%p (성장공유형) '신성장기반자금' 사업의 지원내용 파트 참조
대출방식	직접대출, 대리대출, 성장공유형*
기타	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진단 실시(기업 수행)

* 자세한 사항은 '신성장기반자금' 사업의 지원내용 파트를 참조

■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

구분	용자 조건
대출한도	기업당 1억원 이내(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직접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직접대출, 운전) 6년 이내 (거치기간: 3년 이내)
대출금리	2.5%(고정)
대출방식	직접대출 *
기타	자금신청·접수 후,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여 대출, 대출 후 담당 전문위원을 통한 멘토링 수행

* 자세한 사항은 '신성장기반자금' 사업의 지원내용 파트를 참조

II. 개발기술사업화

■ 지원대상

-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- 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-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
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 - ※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녹색기술인증,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
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- 『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-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-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
- 특허청의 IP-R&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
- Inno-Biz, Main-Biz, 벤처기업,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
-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(1억원 이상)의 자체 기술
-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
-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

■ 지원규모

구분	용자 조건
대출한도	(직접대출)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 (성장공유형) 기업당 30억원 이내
대출기간	(직접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(성장공유형) '신성장기반자금' 사업의 지원내용 파트 참조
대출금리	(직접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(성장공유형) '신성장기반자금' 사업의 지원내용 파트 참조
대출방식	직접대출, 성장공유형
기타	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

■ 문의처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용자상담 지역본부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☎ (국번없이) 1357)